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(목적)

이 약관은 부산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한다)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텔레뱅킹, STM 등 이하 '서비스'라 한다)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'이용자'라 한다)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서비스 이용매체)

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이하 '기본약관'이라 한다)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"전자적 장치"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3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- ① "무계좌회원"이라 함은 은행의 입출금 예금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- ② "계좌회원"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로 은행의 입출금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
제 4 조(서비스의 종류)

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별 아래과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.

① "무계좌회원"은 전자금융 뱅킹 서비스를 제외한 모바일뱅킹을 통한 혜택(선물하기, 라이프, 여행) 등의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"계좌회원"은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조회, 계좌이체, 계좌 개설, 해지, 공과금 납부, 대출, 자동이체, 사고신고, 상담안내, 이용자정보 변경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(서비스 신청 및 이체한도)

-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의 입 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 한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'온라인 이용자로'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온라인이용자는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.
- ③ 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에 한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'무계좌회원'으로 가입 할 수 있고 뱅킹 서비스를 제외한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 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.
- ④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 신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 신청 및 확인절 차를 거쳐 이용가능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이용자가 은행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최고한도 <별표 1> 이내에서 1회 이체한도와 1일 이체한도를 신청서 상 기재 하여야 합니다.

제 6 조(이용자 본인 확인방법)

- ① 기본약관 제 4 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이용자가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(또는 카드번호)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.
- ②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 2조제1항제6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은행에 등록되어 있

는 것 또는 은행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제 7 조(출금계좌)

- ① 출금계좌(자동이체 출금계좌 포함)로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은 본인 명의의 입출 금식 예금에 한합니다.
- ②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등록은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후 출금계좌 관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출금계좌를 추가 등록 또는 해제 할 수있습니다.

제 8 조(계좌 개설 및 해지)

-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와 연결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입출금식 계좌는 비대면 실명확인 후 개설이 가능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인 경우 근거계좌로 대체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③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, 통장발급을 하지 않습니다.
- ④ 통장 및 증서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 인출의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, 예금거래 신청서,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9 조(대출서비스)

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습니다.

- ② 제 1 호의 약정은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 6 조의 이용자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 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.

제 10 조(부동산 전자등기)

- ① 이용자가 대출과 연계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부동산 전자등기를 약정할 때 제 6 조의 이용자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 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은행이 담보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(서비스의 제한)

- ① 기본약관 제 14 조(거래의 제한)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1. 본인 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
 - 가. 계좌 비밀번호:3회
 - 나.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일련번호 : 3 회
 - 다. 토큰 또는 카드형 OTP : 전 금융기관 통합 10 회
 - 라. 디지털(모바일)OTP: 5회
 - 마. FIDO 인증(지문, 홍채, 안면, PIN, 패턴 등): 5회
 - 바. 무계좌회원 비밀번호(간편비밀번호) : 5 회
- 2. 텔레뱅킹 이용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로써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사전 등록한 이용번호와 다른 경우

- 3. 제 12 조의 이용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
- ②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후 이용 해제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무계좌회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이용해제 신청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12조 (이용수수료)

- ① 이용수수료는 〈별표 2〉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의 실행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. 단,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합니다.
- ②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 납부 방법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은행은 수수료(율)를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, 수수료(율)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 29 조를 준용합니다. (2019.05.31 개정)

제 13 조(서비스 이용의 변경.해지)

-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.해지 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은 변경.해지됩 니다. 다만,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1 항의 변경.해지 신청 이전에 이용자가 은행에 의뢰하여 접수되어 있는 예약이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이용의 변경.해지에 관계없이 이체처리 합니다.

제 14 조(서비스별 이용시간)

서비스별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이용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

제 15 조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본약관 제 29 조를 준용합니다.

제 16 조(준용규정)
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,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, 전자서명법 등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/기업용), 외환거래기본약관, 각 예금별(신탁포함) 약관, 기타 개별 거래약관, 금융결제원제 규약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② 은행과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2 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.

<별표 1> 전자금융 이체한도

구 분		기 본 한 도	
		1 회	1 일
인터넷뱅킹 (모바일뱅킹)	개인	1 억원	5 억원
	기업	10 억원	50 억원
텔레뱅킹	개인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
	기업	1 억원	5 억원

<별표 2> 이용수수료

서비스 종류	수 수 료
조회	없음

당행이체		당행이체	없음
이체 타행이체	인터넷뱅킹	건당 500 원	
	U 8 0 M	텔레뱅킹(ARS)	건당 500 원